

## [취재요청]

근골격계 산재불승인 남발 규탄.

현장 재해조사 시트 개정 민주노총 집회 및 농성 투쟁 돌입

11월 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 종합 청사 앞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로 근골격계 질환 (일명: 골병)으로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5%대였던 산재승인률은 45%대로 급감했습니다. 현장의 재해조사도 20%대 미만이었고, 재해조사를 하더라도 공단 자문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승인 남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노동부 산재보험 TF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3년여에 걸쳐 진행했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2차에 걸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의적인 불승인 남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개선으로 현장 재해조사에서 사용되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도입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추천하고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경총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산재노동자의 편에서 공정 객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노동부가 경총의 반대를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11월 5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농성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65%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정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일시: 2013년 11월5일(화) 오후 2시

장소: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

주최: 민주노총

대회사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투쟁경과 - 민주노총 노안국장

투쟁사 - 금속노조/ 건설노조

불승인 사례 현장 발언 - 금속노조 노안실장

노래공연

연대사

결의문 - 금속노조

\* 참조자료 : 근 골격계 산재 불승인 현황

첨부자료

1. 근골격계 질환 산재 불승인 현황

가.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65%를 상회

[표 1] 국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자 발생현황(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연도	총 업무상 질병자수 (A)	근골격계질환자			
		신체부담 작업 (B)	요통 (C)	계 (D=B+C)	업무상 질병자 대비 비율(% (=D/A)
2006	10,235	1,615	4,618	6,233	60.9
2007	11,472	1,390	6,333	7,723	67.3
2008	9,734	1,471	5,232	6,703	68.8
2009	8,721	1,343	4,879	6,222	71.3
2010	7,803	1,292	4,008	5,300	69.2

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률 65%에서 45%로 급감

[표 2] 연도별 신체부위별(상지, 하지, 척추) 요양결정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1월		
	신청	불승 인	불승 인율	신청	불승 인	불승 인율	신청	불승 인	불승 인율	신청	불승 인	불승 인율	신청	불승 인	불승 인율
계	4,130	1,409	34.1	3,479	1,562	44.9	4,482	1,658	37.0	5,497	2,582	47.0	5,250	2,821	53.7
상지	1,280	320	25.0	1,320	416	31.5	1,566	500	31.9	1,777	729	41.0	1,924	892	46.4
하지	312	150	48.1	274	146	53.3	329	172	52.3	498	329	66.1	483	347	71.8
척추	2,501	924	36.9	1,832	982	53.6	2,538	963	37.9	3,143	1,486	47.3	2,774	1,536	55.4
기타	37	15	40.5	53	18	34.0	49	23	46.9	79	38	48.1	69	46	66.7

(근로복지공단, 2011)

다. 불승인 사유의 50% 이상이 퇴행성 근골격계

[표 3] 연도별 불승인 사유별 건수 및 비율

연도	불승인 건수	불승인 사유	사유별 건수	비율 (%)
2006년	1,409	기존질환(퇴행성 질환)	754	53.51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349	24.77
		기존질환이며, 신체부담작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188	13.34
		근로자 비해당	2	0.14
		적용제외 사업	3	0.21
		기타(신청상병 인지되지 않거나 재해경위 불분명 등)	113	8.02
2007년	1,562	기존질환(퇴행성 질환)	815	52.18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416	26.63
		기존질환이며, 신체부담작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164	10.50
		근로자 비해당	6	0.38
		적용제외 사업	6	0.38
		기타(신청상병 인지되지 않거나 재해경위 불분명 등)	155	9.92
2008년	1,658	기존질환(퇴행성 질환)	829	50.00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498	30.04
		기존질환이며, 신체부담작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210	12.67
		근로자 비해당	5	0.30
		적용제외 사업	7	0.42
		기타(신청상병 인지되지 않거나 재해경위 불분명 등)	109	6.57
2009년	2,582	기존질환(퇴행성 질환)	1,284	49.73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598	23.16
		기존질환이며, 신체부담작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433	16.77
		근로자 비해당	1	0.04
		적용제외 사업	6	0.23
		기타(신청상병 인지되지 않거나 재해경위 불분명 등)	260	10.07
2010년 11월	2,821	기존질환(퇴행성 질환)	1,331	47.18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520	18.43
		기존질환이며, 신체부담작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765	27.12
		근로자 비해당	2	0.07
		적용제외 사업	5	0.18
		기타(신청상병 인지되지 않거나 재해경위 불분명 등)	198	7.02

(근로복지공단, 2011)

### 3.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심사 제도개선 논의 경과 및 결과

#### 1) 노동부 노사정 산재보험 TF 논의 경과

- 2010년 산재보험 TF 구성 3년여 논의 (직업병 인정기준 전반 개정 논의 포함)
-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 1,2차 연구 용역 진행
-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직업병 목록에 명시 :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 개정 (2013년 7월 시행)
-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마련 2013년 7월 시행하기로 합의
-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과 근로복지공단 지침 논의
- 2013년 산재보험 TF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경총 반발로 논의 파행
- 노동부 면담, 공단 면담, 국정감사 질의 진행

#### 2)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란? (이하 재해조사 시트)

-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 재해조사를 나가야 함.
- 작업에 신체 부담의 정도를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재해조사 시트'임
- 공단이 재해조사 시트를 갖고 업무 부담을 조사하면 공단 자문의가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여 업무 부담 여부를 5단계중의 하나로 표기하여 심의 기구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산재 여부를 심의 판단함.

#### 3) 현행 재해조사 시트의 문제점

- 재해조사 시트는 부위별(어깨, 허리, 목등) 신체부위별로 작업의 위험 요인과 노출 시간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의 재해조사 시트는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를 통한 신체부위별로 부담 작업 조사 결과와 업무부담 정도(5단계)를 표시하는 최종 결과 사이에 아무런 기준이 없음.
- 결과적으로 신체부담 정도와 업무관련성 평가 사이에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공단 자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지속됨.

#### 4) 기타 근골격계 산재 불승인 납발의 요인

- 2010년 기준 현장 재해조사 실시율 18%. 근골격계 현장 재해조사 실시 원칙으로 공단 규정 개정 했으나, 2013년 현재도 실시율은 30%대임.
- 재해조사 결과나 산재 신청 노동자의 제출 서류가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음. 공단의 심의안으로 요약본 3-4쪽만 제출
- 공단 자문의 1,700명중 직업환경 의학의사는 60-70명 내외

- 업무관련성 평가를 5단계로 하고 있으나, 업무 부담 1/2로 50%가까이 편중

#### 4.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개요 ( 1, 2차 연구 용역 결과)

구분	현행 안	개선 안
부담 작업 항목	부위와 조사항목 선정의 객관적 전문적 근거 없음	신체부담 작업의 평가도구로 국제적 공신력 있는 룰라, 레바 기준 보완 및 검증
주관적 평가	신체부담 작업 조사 이후 업무 부담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없음. 주관적 평가	룰라, 레바를 이용한 계량화, 점수화로 판단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단계구분	5단계로 구성, 업무부담 1/2 항목에 편중. 단계 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문제와 연동	3단계로 구성하여 재해조사 결과가 업무 부담 1/2로 의미 없는 조사가 되는 것을 방지함.
과거 직업력, 노동시간등 종합 판단	공단 자문의의 주관적 판단	신체부담 작업의 객관적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산재신청 노동자의 직업력, 공정, 노동시간등을 종합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 평가

#### 5.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정 투쟁의 의미

- 근골격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노동자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건수의 65%를 상회하는 질병으로, 노동자 직업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질병임 ( 금속 제조업을 비롯하여 건설, 학교 급식 조리사, 서비스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등 전 업종의 노동자 직업병 조사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절대적 비중 차지)
- 현장 재해조사 실시율도 낮고, 실시된 현장 재해조사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평가가 진행되어 불승인이 남발되어 왔음
- 3년여의 산재보험 TF 논의를 통하여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직업병 목록에 명시하고, 현장 재해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규정도 개정하였음
- 그러나, 현장 재해조사 실시과정에서 신체부담작업과 업무관련성 평가 사이에 객관 공정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제도개선은 첫 단계부터 왜곡되는 결과를 낳게 됨.
- 2013년 노동부는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7월부터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도출 시행하겠다고 합의 한바 있음
- 재해조사 시트에 객관 공정한 기준 도입을 경총의 반발이라는 이유로 표류시키고 있는 것은 가장 대다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개선안을 후퇴시키는 것임.